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40	11	1982. 5. 6	종재 하 영 기

의 인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월"
일부개정

의결사항 1.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
업무이월"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
한다.

2. 시행일자 : 1982. 5. 7

제의관제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22조

제의취지 재천보전이 확실한 대출금에 대한 금리저증
의 압리화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등이 보증
한 상업어음의 금융기관 할인시에 적격담보



관련어음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토록 함에
따라 당행의 관련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
단일화하고자 본전 전기와 같이 체결할 것
을 제의함

참고사항 1. 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12 조

①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
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(이 러 생 략)

2. 첨부물

가.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금리추이

나.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규모추이

(붙임)

“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일부개정안”

현행			개정 (안)	
1. 여신업무이율			1. 여신업무이율	
구분	이율		구분	이율
재 활 인	상업어음	저작업체 발행(양도	재 활 인	상업어음
		배서및안주조합) 또는		
		수취어음: 연 5.0%		
		거취어음: 연 5.5%		
(이회생략)			(현행과 같음)	
2-3 (생략)			2-3 (현행과 같음)	
(신설)			(경과조치)	
			1982.5.6 이전에 취득한 어음의	
			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 1일까지 증정	
			해당이율을 각각 적용한다	